

[양식 2]



## 2011년도 학술지 계속평가 패널평가 설명자료 및 관련 규정

- 본 양식에 작성 후, 온라인 신청 시 파일탑재 -

2011. 8.

### 대한치과의사협회

평가 담당 실무자 1*	성명	손우영	연락처(사무실)	02)2024-9155
			긴급 연락처(핸드폰)	
	e-mail	scientific@chol.com		
평가 담당 실무자 2	성명	박성민	연락처(사무실)	02)2024-9152
			긴급 연락처(핸드폰)	010-7791-8971
	e-mail	muscle120@nate.com		

\* 평가담당 실무자 1에는 <http://www.kci.go.kr>의 학회정보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정보에서 실무자 (대표 연락처)로 등록된 정보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대표연락처가 학회장(기관장) 정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연락사항 전달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실무담당자 정보(전화, 이메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미비, 확인, 수정 등을 위하여 재단에서 연락드릴 수 있사오니 연락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첫 번째 실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두 번째 실무자 정보도 가급적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재(후보)학술지 패널평가

## 1.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 등재(후보)학술지인 대한치과의사협회지는 치과계 전문직단체의 유일한 기관지로서 1954년도에 창간되었으며, 60여년간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우리나라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하여 왔을 뿐 아니라 한국 치의학계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치의학 발전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지난 60여년간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현재 한국 치의학의 '역사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치의학계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구강보건정책을 선도하는 등 치의학 관련 정책을 펼치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해 올 수 있었음을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본 협회의 '대한치과의사협회지'가 국내에서 인용도가 높은 학술지로서 그 위상을 국제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 논문검색엔진 등재를 위한 요구조건 충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대한치과의사협회지는 Elsevier 산하의 on-line 학술정보 검색엔진인 'SCOPUS'에 등재되어 세계적 학술지로도 인정된 바 있습니다.

본 협회의 등재(후보)학술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국민과 2만 5천여명의 치과의사 회원들, 더불어 치학을 공부하는 치과대학생들에게 최신 치의학의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논문게재를 통하여 학술적 가치를 높이고 국내의 치의학 발전은 물론 아시아 및 세계적으로 우수한 치의학 발전의 성과를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로써 치과계의 신뢰받는 학술지로서 또 치의학계의 '역사서'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국내 치의학 학술지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응원 바라오며, 등재(후보)학술지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2. 참고문헌(각주)의 서지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완전성**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에 기 등록된 논문파일 및 제출된 학술지로 확인(별도로 자료 작성하지 않는 항목임)

## **3. 논문집의 구성과 체제**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에 기 등록된 논문파일 및 제출된 학술지로 확인(별도로 자료 작성하지 않는 항목임)

## **4. 편집위원의 전문성**

- 신청마감일(2011.8.23) 현재 재임 중인 편집위원(편집위원장 포함)의 최근 2년간 (2009년~2010년) 연구실적과 대외활동 등 성과중심으로 작성
  - 각 편집위원별로 논문실적 및 저역서 5편 이내, 대외활동사항 5건 이내 선택 기재

## 편집위원 연구실적 기재 양식

※ 각 편집위원별로 작성

소속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성명	김철환
----	------------	----	-----

### ① 논문실적 및 저역서 : 2년간 (2009~2010년)

논문실적					
게재 연월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처명	학술지 구분	전체 저자수
20100930	구강암 수술 및 재건 환자에서의 C-Reactive Protein 수치의 변화	대한약안면성형재건 외과학회지	대한약안면성형재건 외과학회	등재	2
20100801	Bone Cell Responses of Titanium Blasted with Bioactive Glass Particles	Journal of Biomaterials Applications	Saga Publications LTD	SCI	7
20100501	Evacuated Calcium Phosphate Spherical Microcarriers for Bone Regeneration	Tissue Engineering Part A	Mary Ann Liebert Inc.	SCI	10
20091120	전외측대퇴유리피판(Anterolateral thigh free flap)을 이용한 구강안면 결손부의 재건	대한약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지	대한약안면성형재건 외과학회	등재	3
20090130	구강 편평세포암종 환자의 혈청 종양표지자의 유용성	대한약안면성형재건 외과학회지	대한약안면성형재건 외과학회	등재	2
20090130	구강 편평세포암종에서 태반성장인자의 발현	대한약안면성형재건 외과학회지	대한약안면성형재건 외과학회	등재	2

### ② 대외활동사항 : 2년간 (2009~2010년)

활동기간	활동내역	비고
200905-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수련고시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20100423	미세수술을 이용한 재건수술에 있어서의 술전, 술중, 술후 기본원칙	제51차 대한구강약안면외과학회 종합학술대회
20100423	법랑아세포종 환자에서의 하악골절제후 비골피부유리피판을 이용한 재건례	제51차 대한구강약안면외과학회 종합학술대회
20091030	sketal remodeling and functional adaptation after mandibular condyle fracture	제48차 대한약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종합학술대회
20090509	상악동의 해부와 상악동거상술	창립 84주년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 종합학술대회
20090410	구강 편평세포암종의 혈청 종양표지자의 유용성	제50차 대한구강약안면외과학회 종합학술대회

## 편집위원 연구실적 기재 양식

※ 각 편집위원별로 작성

소속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성명	강병철
----	----------------	----	-----

### ① 논문실적 및 저역서 : 2년간 (2009~2010년)

논문실적					
계재 연월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처명	학술지 구분	전체 저자수
20101201	Dichloromethane fraction from Gardenia jasminoides: DNA topoisomerase 1 inhibition and oral cancer cell death induction	PHARMACEUTICAL BIOLOGY	SWETS ZEITLINGER PUBLISHERS	SCI	17
20101201	Reference dose levels for dental panoramic radiography in Gwangju, South Korea	RADIATION PROTECTION DOSIMETRY	NUCLEAR TECHNOLOGY PUBL	SCI	4
20100901	Three dimensional evaluation of impacted mesiodens using dental cone beam CT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대한구강악안면 방사선학회	등재	4
20100401	Identification of Putatively Virulent Candida Species in Saliva Obtained from Elderly Individuals in Gwangju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지	대한구강악안면 병리학회	등재	14

### ② 대외활동사항 : 2년간 (2009~2010년)

활동기간	활동내역	비고
20100319	3D Evaluation of Facial Asymmetry in Mandibular Prognathism Individuals using an alternate spherical coordinates	The 43rd Korean Academy of Oral and Maxiofacial Radiology
20110525	Program and Abstract book, 1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dentomaxillofacial Radiology	1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dentomaxillofacial Radiology
20110525	Carotid artery calcifications on panoramic radiograph and peripheral arterial disease	1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dentomaxillofacial Radiology

## 편집위원 연구실적 기재 양식

※ 각 편집위원별로 작성

소속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성명	김광만
----	------------	----	-----

### ① 논문실적 및 저역서 : 2년간 (2009~2010년)

논문실적					
계재연월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처명	학술지구분	전체저자수
201012	인공치아용 안정화 지르코니아의 물리적 특성 및 생체적합성(1)	한국생체재료학회지	한국생체재료학회	등재	4
201012	소독액이 인사재의 표면특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치과기재학회지	대한치과기재학회	등재	5
201003	타이타늄 표면에 항생제를 함유한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의 코팅에 따른 약물방출 및 항균효과	대한치과기재학회지	대한치과기재학회	등재	5
201005	The surface profile and biocompatibility of hydroxy apatite blasted gold membrane as a periodontal guided tissue regeneration membrane	Surface & Interface Analysis	thin solid film	SCI	6
200906	치과용 거타퍼차 포인트의 세포독성	대한치과기재학회지	대한치과기재학회	등재	6
200903	10종의 치과용 합금의 세포독성평가	대한치과기재학회지	대한치과기재학회	등재	4
저역서					
발행연월	저역서명	발행처명	저역서구분	전체저자수	
201103	최신치과재료학 6판	군자출판사	저서	21	

### ② 대외활동사항 : 2년간 (2009~2010년)

활동기간	활동내역	비고
2009-201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리기위원회(기준규격분과위원장)	
2009-2010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연구위원, 자재위원	
2009-201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	
2009-2010	기술표준원 ISO TC 106, TC 194 전문위원	
2009-2010	대한치과기재학회 부회장	

## 편집위원 연구실적 기재 양식

※ 각 편집위원별로 작성

소속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성명	김용덕
----	----------------	----	-----

### ① 논문실적 및 저역서 : 2년간 (2009~2010년)

논문실적					
계재연월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처명	학술지구분	전체저자수
2009.07	Expression of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 B ligand,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 B, and osteoprotegerin, following low-level laser treatment on deproteinized bovine bone graft in rats	LASERS IN MEDICAL SCIENCE	미국레이저학회	SCI	9
2010.01	Low-level laser irradiation facilitates fibronectin and collagen type I turnover during tooth movement in rats	LASERS IN MEDICAL SCIENCE	미국레이저학회	SCI	6
2010.01	Effect of hyperbaric oxygen on demineralized bone matrix and biphasic calcium phosphate bone substitutes	ORAL SURGERY ORAL MEDICINE ORAL PATHOLOGY ORAL RADIOLOGY AND ENDODONTICS	Mosby	SCI	7
2010.03	Bone healing with an in situ-formed bioresorbable polyethylene glycol hydrogel membrane in rabbit calvarial defects	ORAL SURGERY ORAL MEDICINE ORAL PATHOLOGY ORAL RADIOLOGY AND ENDODONTICS	Mosby	SCI	6
2010.09	Expression of TGF-beta 1, Osteonectin, and BMP-4 in Mandibular Distraction Osteogenesis With Compression Stimulation: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 Study and Biomechanical Test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미국구강악안면외과학회	SCI	8

### ② 대외활동사항 : 2년간 (2009~2010년)

활동기간	활동내역	비고
2010-현재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이사	
2010-현재	대한구순구개열학회 섭외이사	
2009-현재	국제임플란트학회 Fellow (ITI Fellow)	

## 편집위원 연구실적 기재 양식

※ 각 편집위원별로 작성

소속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성명	백경원
----	---------------	----	-----

### ① 논문실적 및 저역서 : 2년간 (2009~2010년)

논문실적					
게재연월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처명	학술지구분	전체저자수
2010.04	Does the presence of antagonist remaining teeth affect implant overdenture succes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Oral Rehabilitation	Wiley-Blackwell	등재	2
2010.07	Dental caries prevalence of medieval Korean people	Archives of Oral Biology	Elsevier	등재	7

### ② 대외활동사항 : 2년간 (2009~2010년)

활동기간	활동내역	비고
2009.01.~2009.12.	일본 요코하마 쓰루미대학 치학과부속병원 구강악안면임플란트과 특별연구원	International Team for Implantology(ITI) 2008-2009 국제장학생
2009.11	인도네시아 발리 제5회 아시아 임플란트 학회 학술대회 발표 "Does the presence of antagonist remaining teeth affect implant denture success? -A systematic review-" 발표	영어 발표
2009.12	일본 후쿠오카 사가 제13회 일본 악안면 임플란트 학회 / 환태평양 임플란트 학회 학술대회 발표 "Investigation of an adequate evaluation system for implant treatment - Retrospective comparison of SAC (Straightforward Advance Complex) classification and UCLA evaluation" 발표	일본어 발표
2010.1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제9회 아시아구강악안면외과학회 학술대회 발표 "In vitro comparison of the biomechanical stability of various resorbable screw fixation methods for 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발표	영어 발표

## 편집위원 연구실적 기재 양식

※ 각 편집위원별로 작성

소속	아주대학교	성명	이정근
----	-------	----	-----

### ① 논문실적 및 저역서 : 2년간 (2009~2010년)

논문실적					
계재 연월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처명	학술지 구분	전체 저자수
2009.10	비스포스포네이트로 인한 하악 및 상악골에 발생한 골괴사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구강악안면과학회지	대한구강악안면과학회	등재	4
2009.10	Outfracture osteotomy sinus graft technique의 유용성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구강악안면과학회지	대한구강악안면과학회	등재	4
2010.05	Relationship of Synovial Tumor Necrosis Factor alpha and Interleukin 6 to Temporomandibular Disorder	J Oral Maxillofac Surg	American Association of Oral & Maxillofacial Surgeons	SCI	3
2010.07	Outfracture Osteotomy on Lateral Maxillary Wall as a Modified Sinus Graft Technique	J Oral Maxillofac Surg	American Association of Oral & Maxillofacial Surgeons	SCI	1
저역서					
발행 연월	저역서명	발행처명	저역서 구분	전체 저자수	
2009.10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교과서	의치학사	저서	2(챕터집필)	
특허					
연월	특허명	등록번호	국내/국외		
2010.01	Oilogopeptide for enhancing osseointegration amd bone formation	10-0879704	국내		

### ② 대외활동사항 : 2년간 (2009~2010년)

활동기간	활동내역	비고
2008.4~현재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뼈은행실행위원장	학회임원
2003.11~현재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기획이사	학회임원
2009.11~현재	대한치과이식학회 경기지부 부회장	학회임원
2009.3~현재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경기지부 학술이사	학회임원
2009.1~현재	대한골다공증학회 치과분과위원장	학회임원
2010.12.5	국제치아뼈은행 심포지움	학술강연

## 편집위원 연구실적 기재 양식

※ 각 편집위원별로 작성

소속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성명	권공록
----	----------------	----	-----

### ① 논문실적 및 저역서 : 2년간 (2009~2010년)

논문실적					
계재연월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처명	학술지구분	전체저자수
2009.06	발치와에 즉시 식립한 뼈기형 임플란트의 생물학적 안정성에 관한 전향적 연구	대한치과턱관절교합학회지	대한치과턱관절교합학회	등재	6
2010.10	Immediate loading of two implants supporting a magnet attachment-retained overdenture: one year clinical study	Implant Dentistry	ICOI	SCIE	3
2010.12	이악물기 시 발생하는 치아변형에 대한 구강보호장치의 역할	구강응용회복학회지	대한치과턱관절교합학회	등재	5
저역서					
발행연월	저역서명	발행처명	저역서구분	전체저자수	
2010.04	명쾌한 총의치 제작	대한나래출판사	역서	2	

### ② 대외활동사항 : 2년간 (2009~2010년)

활동기간	활동내역	비고
2009.09	국제치과보철학회(ICP) 초청강연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2010.08	일본 심미학회 초청강연	일본 이와테
2011.04	중국 south china 학술대회 초청강연	중국 광조우
2010-현재	대한치과보철학회 총무이사	
2010-현재	대한스포츠치의학회 부회장	

## 편집위원 연구실적 기재 양식

※ 각 편집위원별로 작성

소속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성명	권대근
----	----------------	----	-----

### ① 논문실적 및 저역서 : 2년간 (2009~2010년)

논문실적					
계재연월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처명	학술지구분	전체저자수
2010.07	Study of an experimental microthreaded scalloped implant design: proximal bone healing at different interimplant distances in a canine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Maxillofacial Implants.	Academy of Osseointegration	SCI	6 (교신저자)
2010.11	Polymorphisms in the Matrilin-1 gene and risk of mandibular prognathism in Koreans	J Dent Res.	국제치의학연구학회	SCI	9 (교신저자)
2010.11	Occlusal plane change after intrusion of maxillary posterior teeth by microimplants to avoid maxillary surgery with skeletal Class III orthognathic surgery.	American Journal of Orthodontics Dentofacial Orthopedics.	미국치과교정학회	SCI	3명 (공저자)
2010.02	Proper mesiodistal angles for microimplant placement assessed with 3-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images.	American Journal of Orthodontics Dentofacial Orthopedics.	미국치과교정학회	SCI	3명 (공저자)
2010.04	The effects of Runx2 immobilization on poly (epsilon-caprolactone) on osteoblast differentiation of bone marrow stromal cells in vitro.	Biomaterials.	Biomaterials	SCI	7명 (공저자)

### ② 대외활동사항 : 2년간 (2009~2010년)

활동기간	활동내역	비고
2009.10.	미국 Bone & Mineral Research 학회 (Colorado Denver)	발표 연자
2010.06.	일본악변형증학회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심포지움 연자
2010.10.	미국 Bone & Mineral Research 학회 (캐나다 토론토)	발표 연자
2010.10.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전라북도 변산 대명콘도)	교육강연 연자
2009~현재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국제이사

## 편집위원 연구실적 기재 양식

※ 각 편집위원별로 작성

소속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성명	박효상
----	----------------	----	-----

### ① 논문실적 및 저역서 : 2년간 (2009~2010년)

논문실적					
계재연월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처명	학술지구분	전체저자수
2009.05	Skeletal Anchorage Part 1	Journal of clinical Orthodontics	Journal of clinical Orthodontics	비등재	7
2009.06	Skeletal anchorage Part 2	Journal of clinical Orthodontics	Journal of clinical Orthodontics	비등재	7
2009.08	Five-year experience with orthodontic miniscrew implants: a retrospective investigation of factors influencing success rates	American Journal of Orthodontics and Dentofacial Orthodontics	미국교정학회	SCI	4
2010.02	Forced eruption of a labially impacted canine using joined micro-implants.	J Clin Orthod.	Journal of clinical Orthodontics	비등재	2
2010.11	Polymorphisms in the Matrilin-1 Gene and Risk of Mandibular Prognathism in Koreans.	J Dent Res	International and American association of Dental Research	SCI	9
2010.11	Occlusal plane change after intrusion of maxillary posterior teeth by microimplants to avoid maxillary surgery with skeletal Class III orthognathic surgery.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미국교정학회	SCI	3
2010.02	The proper mesiodistal insertion angles for microimplant placement assessed by 3D CT images.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미국교정학회	SCI	3

### ② 대외활동사항 : 2년간 (2009~2010년)

활동기간	활동내역	비고
2009.04-현재	대한치과교정학회 교육이사	
2008.04-현재	경북대학교병원 치열교정연구센터 센터장	

## 편집위원 연구실적 기재 양식

※ 각 편집위원별로 작성

소속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성명	김경년
----	--------------	----	-----

### ① 논문실적 및 저역서 : 2년간 (2009~2010년)

논문실적					
계재연월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처명	학술지구분	전체저자수
2009.12	Type II and III Taste Bud Cells Preferentially Expressed Kainate Glutamate Receptors in Rats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 Pharmacology	Korean Physiological Society and Korean Society for Pharmacology	SCIE	6
2009.09	The Differential Effect of Whole-body Irradiation on Morphine- and $\beta$ -Endorphin- Induced Antinociceptive Actions in Mice	Interantional Journal of Oral Biology	Korean Academy of Oral Biology	등재	2
저역서					
발행연월	저역서명	발행처명	저역서구분	전체저자수	
2009.03	치의학을 위한 생리학 (2판)	대한나래출판사	저서	15	

※ 학술지 구분은 등재, 등재 후보, SCI, SCIE, SSCI, A&HCI로 표기

※ 논문과 저역서 포함하여 5편 이내 선택기재

### ② 대외활동사항 : 2년간 (2009~2010년)

활동기간	활동내역	비고
20090618	한국식품영양학회 - 맛의 생리학적 기전	초청 강연
20091103	The 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molecular and neurla mechanism of taste and olfactory perception 논문발표 : Neurotropic factors and their receptors in rat taste bud cells	초청참석
20101113	제1회 대한연하장애학회 추계학술대회 : 삼림과 관련된 구강감각과 미각 시스템	초청 강연
20101127	제 9회 대한기초치의학학술대회: 외분비선에 발현하는 미각 관련 유전자 연구	우수논문발표상
2009.01-현재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치의학교육인증평가위원 및 실행위원	

## 편집위원 연구실적 기재 양식

※ 각 편집위원별로 작성

소속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성명	홍성두
----	--------------	----	-----

### ① 논문실적 및 저역서 : 2년간 (2009~2010년)

논문실적					
계재연월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처명	학술지구분	전체저자수
2009.02	CXCR-4 knockdown by Small Interfering RNA Inhibits Cell Proliferation and Invasion of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Cells.	J Oral Pathol Med	Wiley	SCI	8
2009.02	Inhibition of Akt activity induces the mesenchymal-to-epithelial reverting transition with restoring E-cadherin expression in KB and KOSCC-25B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cells.	J Exp Clin Cancer Res	BioMed Central	SCIE	7
2009.05	Prognostic significance of CXCR-4 expression in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Oral Surg Oral Med Oral Pathol Oral Radiol Endod	Elsevier	SCI	6
2009.12	Ameloblastic carcinoma: an analysis of 6 cases with review of the literature.	Oral Surg Oral Med Oral Pathol Oral Radiol Endod	Elsevier	SCI	5
2010.06	The effect of a laminin-5-derived peptide coated onto chitin microfibers on re-epithelialization in early-stage wound healing.	Biomaterials	Elsevier	SCI	6

※ 학술지 구분은 등재, 등재후보, SCI, SCIE, SSCI, A&HCI로 표기

※ 논문과 저역서 포함하여 5편 이내 선택기재

### ② 대외활동사항 : 2년간 (2009~2010년)

활동기간	활동내역	비고
2009.09.22-24	IADR Pan Asian Pacific Federation (PAPF) 논문 발표	중국
2009.05.22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 제71차 학술대회 논문(2편) 발표	
2009.11.27-28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 제72차 학술대회 논문 발표	
2010.11.26-27	제9회 대한기초치의학 학술대회	
2010.08.16-20	15th International Congress on Oral Pathology and Medicine	

## 5.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에 기 등록된 논문파일 및 제출된 학술지로 확인(별도로 자료 작성하지 않는 항목임)

## 6. 투고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

- 투고논문 심사제도 및 심사(절차)규정 내용 등에 대해 기재
- 2011년도 개선 또는 향후 개선계획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2010년도 심사규정	2011년도 개선규정 또는 향후 개선 계획	비고
<p>제4조(논문 심사 절차) 본 협회지의 논문 심사는 다음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 해당분야 전문가 3인의 심사위원이 본 규정의 제3조를 기준으로 심사한다.</li> <li>1차 심사 결과로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을 내려야 하며, 판정에 대한 종합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li> <li>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 3인이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을 우선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1차 심사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후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 작성자에게 판정 결과와 종합의견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송부하여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게재가’를 판정한다.</li> <li>1차 심사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후재심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 작성자에게 판정 결과와 종합의견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송부하여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한다.</li> <li>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후재심사’로 판정 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재 심사를 실시하며, 재 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보완·수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게재가’를 판정한다. 단, 2회 반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후재심사’로 판정 받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li> <li>1차 심사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로 판정 받은 경우에는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단, 투고자로 부터 재 심사를 요청 받은 후 재 투고시에</li> </ol>	<p>한국연구재단 자체평가 기준이 바뀐다면 심사위원이 4명으로 추가하여 개정하려 함</p>	

는 재 심사에 응할 수 있으나, 심사 위원 3인의 '게재가' 판정을 받아야 한다.	
---	--

※ 신청마감일 현재 2010년도와 대비하여 개선된 규정이 없거나 향후 계획이 없는 경우  
상기 양식(개선계획)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 7. 연구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 연구윤리 관련 규정 내용 기재
- 연구윤리 강화활동(연구윤리교육 실적, 부정행위 처리 및 관리실적 등)에  
대해 기재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및 연구윤리) 본 규정은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협회지의 논문 투고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협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윤리 준수) 본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 1) 게재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인체 실험의 윤리성을 검토하는 기관 또는 지역 “임상시험 윤리위원회”와 헬싱키 선언의 윤리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연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사육과 사용에 관련된 기관 또는 국가연구위원회의 법률을 지켜야 하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한다.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서면동의서 및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연구대상자의 얼굴 사진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눈을 가리며 방사선 촬영 사진 등에서 연구대상자의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눈을 가릴 수 없는 경우는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 게재할 수 있다.
- 4)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와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자료의 부적절한 중복 사용 등이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5) 투고 및 게재 논문은 원저에 한하며,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지에 투고할 수 없다. 또한 본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3조(연구윤리 위반) 본지 제2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한다.

1. 위반사항을 공문으로 경고 조치
2. 투고원고를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
3. 연구윤리위반자에 대하여는 본지에 2년간 논문투고 금지

제4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상기 연구윤리 외 논문에 대해서는 제3조(연구윤리위반)를 철저히 적용함.
- 타 논문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하는 논문
  - 학술 발전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는 논문

※ 심사항목별 세부내용은 신청요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술지 발행 관련 제규정

※ 2010년도에 적용되었던 각종 기관 규정 전문을 복사 후 저장

## ▶ 기관 정관(규정)

### 정 관

제정	1952.	3.	16
개정	1962.	4.	21
개정	1973.	4.	13
개정	1974.	4.	13
개정	1975.	4.	12
개정	1976.	4.	17
개정	1977.	4.	17
개정	1977.	11.	5
개정	1978.	4.	1
개정	1980.	3.	29
개정	1981.	4.	25
개정	1983.	4.	9
개정	1987.	4.	18
개정	1989.	4.	8
개정	1991.	4.	20
개정	1992.	4.	25
개정	1993.	4.	17
개정	1995.	4.	22
개정	1998.	4.	25
개정	1999.	4.	17
개정	2000.	4.	22
개정	2002.	4.	27
개정	2003.	4.	19
개정	2005.	4.	23
개정	2006.	4.	29
개정	2007.	4.	21
개정	2008.	4.	26
개정	2009.	4.	25

##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 본 협회는 의료법 제28조(중앙회)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와 의도의 양양 및 의권의 옹호,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4.22)

제3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사무소) 본 협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조직) 본 협회는 서울특별시·각 광역시·각 도·군·진 및 공직치과의사회(이하 “지부”라 칭함)를 두고 각기 사무소는 각 시도청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장 사 업

제6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국민구강보건발전에 관한 사항
2. 치의학발전에 관한 사항
3. 의도의 양양과 의권옹호에 관한 사항
4. 치과의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교육에 관한 사항
5. 치과의료사업의 조사연구와 개선에 관한 사항
6. 각 단체 상호연락 조정과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에 관한 사항
7. 대정부 건의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8. 치과기재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9. 군치무업무 및 공중보건치과사업무의 발전 향상에 관한 사항
10. 기관지, 협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12. 보험업무에 관한 사항
13.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
14. 치과분야종사인력의 무료취업알선 및 소개에 관한 사항(신설 93. 4.17)
15. 치과의사국가시험(예비시험 포함) 연구에 관한 사항(신설 2002. 4.27)
16. 치과의료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신설 2007. 4.21)
17. 기타 본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3장 회 원

제7조(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각 지부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의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제8조(명예회원) 협회 또는 치의학계를 위하여 현저히 공헌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로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협회 정관·규정 및 결의사항의 준수 의무
  2.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의무
- ② 회원은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목적이나 사업이 협회와 동일한 별개의 단체를 임의로 조직할 수 없다.
- ④ 회비납부와 기타 의무를 완수한 자에게는 협회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질의, 환자와 발생된 제문제에 대한 진정·회원간에 발생된 제문제의 조정 신청,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의 신청 및 회원에게 필요한 추천의 요구
  3. 협회 제반회무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단, 소속지부를 거쳐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 한한다.)
- ② 회원이 제9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제4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8인 이내(개정 2002. 4.27, 2007. 4.21)
3. 이 사 20인(상근보험이사 1인)  
(개정 2002. 4.27, 2003. 4.19, 2005. 4.23, 2006. 4.29, 2007. 4.21, 2009. 4.25)
4. 감 사 3인

제12조(회장)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2. 4.27)

제14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협회 회무를 각각 분장 처리한다.

제15조(감사)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지부를 대표하는 부회장 2인과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부회장 1인은 제외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장 및 부회장을 공동후보로 하여 대의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개최일 15일전까지 협회 사무처에 입후보등록을 하며, 총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한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득표수에 의한 1위와 2위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개정 2002. 4.27)

③ 지부를 대표하는 부회장 2인은 제57조 규정에 의한 지부장협의회에서 선출하며,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부회장 1인은 치의학회장이 겸임한다.  
(신설 2002. 4.27)

④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회장이 총회의 위임을 받아 2인 이내의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07. 4.21)

⑤ 이사의 선출은 별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술이사 및 수련고시이사는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부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한다.  
(개정 2002. 4.27, 2005. 4.23)

⑥ 감사는 총회에서 각 지부대표 1인씩으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로부터 배수공천을 받아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⑦ 회장단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도 있다.

제17조의2(임원의 겸직금지)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신설 2007. 4.21)

제18조(임원의 보선) 임원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결원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차기대의원총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고문) 본 협회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20조(명예회장) 본 협회에 명예회장을 두되 직전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 제5장 대의원 총회

제21조(대의원총회)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제22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대의원의 명단은 정기총회 20일전까지 본 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① 대의원은 각 지부별로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수는 각 지부의 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총 201명으로 한다.

다만, 지부장협의회에서 지부의 장이 협회부회장으로 선출된 때에 그 지부장의 대의원 자격은 지부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의 부회장이 승계한다.(단서 신설 2002. 4.27)

③ 각 지부별 대의원 수는 대의원 개선년도의 1월 1일 현재 본 협회에 보고된 지부별 소속회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부별 대의원 수 산출과정상 발생한 단수처리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한다.(전문개정 93. 4.17)

제24조(대의원의 신분확인) 대의원은 총회출석시 각기 소속된 지부에서 발행한 대의원신분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겸임제한) 본 협회 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26조(총회의 개최)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수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에서는 소집한 부의안건이외의 사항은 처리하지 못한다.

제27조(총회의 성립)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28조(의장, 부의장의 선출) 총회에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두며, 이는 총회에서 각 지부대표 1인씩으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로부터 배수공천을 받아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

제2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0조(의장)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사회를 한다.

제31조(부의장)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32조(의안제출) 각 지부에서 총회에 제출할 안건은 총회 25일전까지 본 협회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긴급토의 안건)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성립된다. 긴급토의안건 의결은 재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4조(회장, 부회장 및 윤리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및 윤리위원의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으며, 결의된 때에는 해임으로 간주한다.(개정 2006. 4.29)

② 제1항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5조(회장, 부회장의 보선) 제34조에 의하여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즉시 행하여야 한다.

제36조(총회의 심의사항) ① 총회에서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5. 이사회에서 부의되는 사항
6. (삭제 91.4.20)

②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3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8. 4.26)

1. 정관 제정·개정 심의분과위원회
2.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8. 4.26)

제37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관개정결의는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8조(총회개최 통고) 총회개최통고는 정기총회는 개최 1개월전, 임시총회는 1주일전으로 한다.

## 제6장 이 사 회

제39조(이사회 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제40조(이사회 의 종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제41조(이사회 의 성립)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42조(이사회 의 업무보고) 각 이사는 정기이사회 회의시 사업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이사회 의 의결) 이사회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담당이사가 단독으로 책임처리할 수 있는 긴급사항은 회장단, 담당이사의 전결로서 처리하고 차기이사회에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지부 의 감사) 필요에 따라 각 지부의 사무감사를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45조(이사회 의 총회보고) 이사회는 매년 총회에 협회사업 및 예산·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지부장 회의) 회장이 회무수행상 필요할 시에는 의장단, 감사단, 이사가 포함되는 지부장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 제7장 위 원 회

제47조(위원회의 구성) 본 협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두며, 담당이사는 당해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보험위원회는 보험이사 또는 상근보험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개정 2002. 4.27, 2005. 4.23, 2006. 4.29, 2007. 4.21)

1. 총무위원회
2. 치무위원회
3. 법제위원회
4. 학술위원회
5. 국제위원회
6. 재무위원회
7. 공보위원회
8. 군무위원회
9. 자재·표준위원회(개정 2009. 4.25)
10. 보험위원회
11. 정보통신위원회
12. 기획위원회(신설 2000. 4.22)
13. 대외협력위원회(신설 2000. 4.22, 2008. 4.26)
14. 문화복지위원회(신설 2000. 4.22)
15. 홍보위원회(신설 2003. 4.19)
16. 수련고시위원회(신설 2005. 4.23)
17. 경영정책위원회(신설 2007. 4.21)

제48조(각위원회임무)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총무위원회(개정 2000. 4.22)
  1. 각종행사의 준비 및 진행
  2. 회원간의 친목 및 후생에 관한 사항
  3. 회원실태파악 및 명부제작에 관한 사항
  4. 각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무일체 관장
- ② 치무위원회(개정 2000. 4.22)
  1. 국민구강보건 및 치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
  2.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③ 법제위원회
  1. 치과의사전문의 및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자격심사에 관한 연구
  2. 회원자격·의무·권리 등에 관한 사항
  3. 본 협회 정관 및 제규정·치과의사윤리 등에 대한 사항
  4. 2개 이상의 단체 또는 개인간의 분쟁조정
  5. 치과의료행위에 대한 조사 및 판정
  6. 상벌에 관한 사항
  7. 치과의료제도 및 보건관계 제법규에 관한 사항
- ④ 학술위원회(개정 2005. 4.23)
  1. 치과의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교육에 관한 사항
  2. 치과의사 국가시험·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3. 학술발전에 대한 방안과 이의 조사보고 및 그 대책에 관한 사항
  4. 학회육성지원 및 신설분과학회의 심사
  5. 종합학술대회개최
  6. 회원보수교육실시
  7. 협회지의 편집 및 출판

- ⑤ 국제위원회
  - 1. 해외의 외국문헌구득 및 연구
  - 2. 국제적인 학회 및 업적교류에 관한 사항
- ⑥ 재무위원회(개정 2000. 4.22)
  - 1. 예산·결산의 편성
  - 2. 재정대책의 연구 조사
  - 3. 회비징수와 찬조금에 관한 사항
  - 4. 세무에 관한 사항
  - 5. 기타 본 협회 재무에 관한 일체사항
- ⑦ 공보위원회
  - 1. 기관지 편집발간 및 협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 2. 본 협회 발전을 위한 출판에 관한 사항
  - 3. 본 협회 공보활동에 관한 사항
- ⑧ 군무위원회
  - 1. 군진지부업무 발전향상에 관한 사항
  - 2. 공중보건치과의사업무의 발전향상에 관한 사항
  - 3. 회원의 보건에 관한 사항
- ⑨ 자재·표준위원회(개정 2009. 4.25)
  - 1. 치과기재약품수급조절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2. 부정, 불량한 치과기재약품의 조사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
  - 3. 치과약품의 기준, 치과재료·기자재·구강위생용품 등의 표준화 및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
  - 4. 기타 치과기재에 관한 일체의 사항
- ⑩ 보험위원회(개정 2000. 4.22, 2006. 4.29)
  - 1. 의료보험제도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 2. 의료수가기준에 관한 사항
  - 3. 자동차보험·산재보험에 관한 사항
- ⑪ 정보통신위원회
  - 1. 인터넷 홈페이지관리 및 자료구축에 관한 사항
  - 2. 회무전산화에 관한 사항
  - 3. 치과의료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 4. 회원전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5. 기타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 ⑫ 기획위원회(신설 2000. 4.22)
  - 1. 본 협회 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당면 정책과제에 대한 대책 수립
  - 3. 의권옹호에 관한 사항
- ⑬ 대외협력위원회(신설 2000. 4.22, 개정 2006. 4.29, 2008. 4.26)
  - 1. 대내외적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 2. 시민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 ⑭ 문화복지위원회(신설 2000. 4.22)
  - 1. 회원복지 및 문화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2. 진료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3. 소비자보호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 ⑮ 홍보위원회(신설 2003. 4.19)
  - 1. 본 협회 홍보정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2. 국민보건 계몽에 관한 사항
  - 3. 대정부 대국민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 4. 홍보정책 계획과 홍보방법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 5. 기타 협회 홍보와 관련된 사항
- ⑯ 수련고시위원회(신설 2005. 4.23)

1. 치과의사수련병원과 전공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 ⑰ 경영정책위원회(신설 2007. 4.21)
  1. 개원의 경영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개원의의 경영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제49조(위원의 위촉) ① 각 위원회 위원은 담당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 의 의결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사임(특별위원회 포함) 및 해임시는 해당위원회의 위원도 사임으로 간주한다.

제50조(소위원회)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1조(특별위원회)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정부로부터의 협조요청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연구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장 지 부

제52조(지부 및 분회) ① 협회는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그 지부)에 의하여 정관 제5조에 의한 지부를 두며, 그 명칭을 서울특별시·광역시·도·군·진·공직치과의사회라 하며 필요에 따라 해외에 특별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는 시·구·군 또는 군에 분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부 또는 분회에 별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지부의 회칙) 각 지부는 본 협회 정관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 협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지부의 총회) 각 지부는 본 협회 총회전 1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고 15일 이내에 그 회의결과를 본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지부의 보고) 각 지부는 매월 다음 사항을 본 협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보고
2. 회원의 이동사항 및 기타사항

제56조(권한위임) 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중 제4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각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93. 4.17, 99. 4.17)

제57조(지부장협의회) ① 협회에 각 시·도지부, 군진지부, 공직지부의 장으로 구성하는 지부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03. 4.19)

② 지부장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5. 4.23)

## 제9장 분과학회

제58조(분과학회) 본 협회에는 각 분과별로 학회를 둔다.

제59조(학술위원회 위원) 각 학회장은 학술위원회 위원이 된다.

제60조(분과학회장) 각 학회장은 해당학회에서 선출한다.

제61조(분과학회의 신설) ① 신설학회는 학술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협회 분과학회로 활동할 수 있다.

② 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개정 99. 4.17)

제61조의2(대한치의학회) ① 협회는 분과학회 협의회로서 대한치의학회를 둔다.(개정 2006. 4.29)

② 대한치의학회는 협회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여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 4.29)

③ 협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한치의학회 재정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 4.29)

제62조(분과학회의 회칙) 각 학회는 본 협회 정관범위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 협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3조(분과학회의 보고) 각 학회는 매분기별로 학회활동사항을 치의학회장을 경유하여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장 재 정

제64조(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연회비, 부담금, 수입금, 후원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06. 4.29)

제65조(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5월 1일부터 익년 4월30일까지로 한다.

제66조(운용제한) 본 협회의 재정은 총회의 결의없이 은행, 제2금융권 예금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 제11장 상 별

제67조(표창) 본 협회 회원 중 학술연구 및 회무에 공헌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표창한다.

제68조(징계) ① 회원 중 다음 각호를 위반한 자에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 4.29)

1. 본 협회 또는 소속 지부의 치과의사 윤리지침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윤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4. 의료법 및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본 협회의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징계처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6. 4.29)

## 제12장 윤리위원회·조사위원회

제69조(윤리위원회) ① 제68조의 규정 위반 행위를 심사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신설 2006. 4.29)

② 치과의사인 윤리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치과의사가 아닌 윤리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신설 2006. 4.29)

③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재정 및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6. 4.29)

제70조(윤리위원의 독립) ① 윤리위원은 치과의사 윤리선언,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신설 2006. 4.29)

② 윤리위원은 제34조에 따른 총회의 불신임 의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한다.(신설 2006. 4.29)

제71조(조사위원회) ① 제68조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회원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협회 내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신설 2006. 4.29)

②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6. 4.29)

## 제13장 사 무 처

제72조(사무처) 본 협회의 회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일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제14장 치과의사국가시험 연구소

제73조(치과의사국가시험 연구소) ① 치과의사국가시험(예비시험 포함)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협회내에 치과의사국가시험 연구소를 둔다.

② 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2. 4.27)

## 제15장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제74조(치과의료정책연구소) ① 치과의료 관련 정책과 제도, 치과병·의원 경영관리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하여 협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과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치과의료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둔다.(신설 2007. 4.21)

## 제16장 보 칙

제75조(규정의 제정) 본 협회의 직제나 직무 및 각 위원회 등에 관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92. 7.16)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변경 시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만료일(1995년도 회기중의 대의원 임기 만료일) 이후부터 시행한다.(허가 93. 7. 6)

###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95. 7. 1)

###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98. 5.23)

###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99. 6.10)

###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2000. 5.23)

###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2002. 5.24)

###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2003. 6. 4)

###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2005. 6.28)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7. 5. 1부터 시행한다.(허가 2006. 5.25)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조는 2008. 5. 1부터 시행한다.(허가 2007. 6.11)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2008. 6.13)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2009. 6. 8)

## ▶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협회 정관 제51조에 의거, 협회지의 원활한 편집·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학술위원회의 추천으로 15명 이내의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협회지의 편집과 투고 논문의 심사를 겸하며, 편집위원장 1명과 편집위원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2. 위원회 위원장은 본 협회 이사회에서 선임된 학술이사로 하며 편집위원은 협회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도록 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본 협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의 임기 및 위원교체는 가능하나 이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논문 주제의 성격에 따라 논문심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논문심사위원은 각 분과학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3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협회지의 발간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원고 송부와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 중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요청 할 수 있다. 다음 사항을 검토·결정하고,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 협회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 협회지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3. 협회지 운영체제의 변경 결정
4. 협회지 게재 원고료의 결정
5. 기타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연구심의 및 결정

제4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심사규정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심사 규정

제1조(목적) 협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을 심사한다.

제2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협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거 선임된 편집위원과 각 분과학회의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논문 심사 기준) 본 협회지의 논문 심사는 다음 기준으로 판정한다.

1. 제목 : 논문 내용의 간결성 및 논리적 반영도
2. 초록 : 논문 내용의 목적성, 주제의 적절성, 길이 (한글 500자, 영문 250단어 이내)
3. 서론/이론적배경 : 연구배경 및 목적성, 연구관찰의 명확성, 문헌고찰의 그 수 및 본문과의 연관성, 이론적 배경과 연구문제 및 목적과의 연결성
4. 연구재료 및 방법 : 연구재료 및 방법, 문제해결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신뢰성, 연구자료 분석 기법의 적절성
5. 연구결과 및 해석 : 연구 분석 결과의 명료성, 자료보고의 충분성, 자료의 정확성, 결과해석의 논리성, 연구문제와 결론의 연계성, 연구결과와 공헌도 및 활용성
6. 참고문헌 : 정확성과 최신성, 적절성, 형식의 적합성
7. 영문초록 : 영문의 정확성, 길이 (제목 30단어, 내용 600단어 내외), 논문 내용의 대표성(간결성)

제4조(논문 심사 절차) 본 협회지의 논문심사는 다음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1.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 해당분야 전문가 3인의 심사위원이 본 규정의 제3조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2. 1차 심사 결과로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을 내려야 하며, 판정에 대한 종합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 3인이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을 우선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1차 심사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후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 작성자에게 판정 결과와 종합의견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송부하여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게재가’를 판정한다.
5. 1차 심사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후재심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 작성자에게 판정 결과와 종합의견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송부하여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한다.
6.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후재심사’로 판정 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실시하며, 재 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보완·수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게재가’를 판정한다. 단, 2회 반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후재심사’로 판정 받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7. 1차 심사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로 판정 받은 경우에는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단, 투고자로 부터 재 심사를 요청 받은 후 재 투고시에는 재 심사에 응할 수 있으나, 심사위원 3인의 ‘게재가’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심사료) 심사위원은 본 규정 제3조 논문심사 기준에 의거 접수된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 하였을 경우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심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1건의 논문을 재 심사하였을 경우 1건으로 본다.)

제6조(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안별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투고규정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학술원고 투고 규정

#### 1. 원고의 성격 및 종류

치의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저, 임상 증례보고, 종설 등으로 하며 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과 협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투고한다.

#### 2. 원고의 게재

원고의 게재 여부와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개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국내와 외국학술지에 이미 게재 된 동일한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원고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원저자에게 있다.

#### 3. 원고의 제출

본지의 투고규정에 맞추어 작성한 논문의 원본 1부(영문초록 포함)와 복사본 3부를 제출한다. 제출된 원고의 내용은 저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사진은 원본을 제출한다.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게재가 승인되면 최종원고 1부와 컴퓨터 파일(CD 또는 USB 등)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원고는 아래의 주소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한다.

(133-837)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81-7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국 Tel: 02-2024-9150 / Fax: 02-468-4656

#### 4. 협회지 발간 및 원고 접수

본지는 연 12회 매월 발간하며,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 5. 원고의 심의

투고된 모든 원고는 저자의 소속과 이름을 비공개로, 게재의 적합성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 해당분야 전문가 3인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저자가 편집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경우 원고를 수정 또는 보완한 다음 수정 또는 보완된 내용을 기술한 답변서, 이전본과 수정본 모두를 편집위원회로 보낸다. 편집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거친 다음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결과 재심사 요망의 판정이 2회 반복되면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6. 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에서는 원고 송부와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 중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 하지 않는다.

#### 7. 저작권

저작권과 관련해 논문의 내용, 도표 및 그림에 관한 모든 출판 소유권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가진다. 모든 저자는 이에 대한 동의서(대한치과의사협회지 원고게재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원고의 저작권이 협회로 이양될 때 저자가 논문의 게재를 승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 8. 윤리규정

1)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 ① 게재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인체 실험의 윤리성을 검토하는 기관 또는 지역 “임상시험윤리위원회”와 헬싱키 선언의 윤리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연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사육과 사용에 관련된 기관 또는 국가연구위원회의 법률을 지켜야 하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한다.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서면동의서 및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연구대상자의 얼굴 사진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눈을 가리며 방사선 촬영 사진 등에서 연구대상자의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눈을 가릴 수 없는 경우는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 게재할 수 있다.
- 2)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와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자료의 부적절한 중복사용 등이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3) 투고 및 게재 논문은 원저에 한한다.
  - ①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 ②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회원은 본 학회지에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었다. 기타 관련 사항은 협회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다.

## 9. 원고 작성 요령

- 1) 원고는 A4 용지에 상, 하, 좌, 우 모두 3cm 여분을 두고 10point 크기의 글자를 이용하여 두 줄 간격으로 작성한다.
- 2) 사용언어
  - ① 원고는 한글 혹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한글 원고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작성하며 모든 학술용어는 2005년 대한치의학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발간한 (영한·한영) 치의학용어집, 2001년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된 넷째판 의학용어집과 2005년 발간된 필수의학용어집에 수록된 용어를 사용한다.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 고유명사, 약품명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번역어의 의미 전달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 소괄호 속에 원어를 같이 쓰고 다음에는 번역어를 쓴다.
  - ③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대소문자 구별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고유명사, 지명, 인명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 그 외에는 소문자로 기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원고에 일정 용어가 반복 사용되는 경우 약자를 쓸 수 있으며 약자를 사용하는 경우,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 소괄호안에 약자를 같이 쓰고 다음에는 약자를 쓴다.
  - ⑤ 계측치의 단위는 SI단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를 사용한다.
  - ⑥ 원고는 간추림부터 시작하여 쪽수를 아래쪽 바닥에 표시한다.

### 3) 원고

원고의 순서는 표지, 간추림,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표 (Table), 고찰, 참고문헌, 그림설명, 그림, 영문초록의 순서로 독립하여 구성한다. 영어논문인 경우에는 Title, Authors and name of institution, Abstract,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Table, Discussion, References, Legends for figures, Figures, Korean abstract 의 순서로 구성한다. 본문에서 아래 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의 순서로 사용한다.

예) 재료 및 방법

1, 2, 3, 4

1), 2), 3), 4)

(1), (2), (3), (4)

a, b, c, d

### 4) 표지

표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 ① 논문의 제목은 한글 50자 이내로 하며 영문의 대문자를 꼭 써야할 경우가 아니면 소문자를 사용한다. 논문의 제목은 간결하면서도 논문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약자의 사용은 피한다.
- ②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와 논문작성에 참여한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고 저자명 사이를 쉼표로 구분한다.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각의 소속을 제 1저자, 공저자의 순으로 표기하여 뒤쪽 어깨번호로 구분한다. 저자의 소속은 대학교, 대학, 학과, 연구소의 순서로 쓰고,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기관을 먼저 기록하고 그 이외의 기관은 저자의 어깨번호 순서에 따라 앞쪽 어깨 번호를 하고 소속 기관을 표기한다. 간추린 제목 (running title)은 한글 20자, 영문 10단어 이내로 한다.
- ③ 논문제목, 저자와 소속은 가운데 배열로 표기한다.
- ④ 아래쪽에는 연구진을 대표하고 원고에 대해 최종책임을 지는 교신저자의 성명을 쓰고 소괄호

속에 교신저자의 소속과 전자우편주소를 기술한다. 필요한 경우 연구비수혜, 학회발표, 감사문구 등 공지사항을 기술할 수 있다.

5) 초록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영문초록을, 영문 원고인 경우에는 한글초록을 작성해야 하며 한글 500자 이내, 영문 250단어 이내로 간결하게 작성한다. 연구의 목적, 재료 및 방법, 결과와 결론을 간단·명료하게 4개 문단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구체적 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약자의 사용이나 문헌은 인용할 수 없다. 간추림의 아래에는 7단어 이내의 찾아보기 낱말 을 기재한다.

6) 본문

① 서론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관한 기술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을 분명히 기술하여야 한다. 논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적 사항은 피하여야 한다.

② 재료 및 방법

연구의 계획, 재료 (대상)와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한다. 실험방법은 재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자료의 수집과정, 분석방법과 치우침 (bias)의 조절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재료 및 방법에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장비, 시약 및 약품은 소괄호 안에 제품명, 제조회사, 도시 및 국적을 명기한다.

③ 결과

연구결과는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나열하며, 실험인 경우 실측치에 변동이 많은 생물학적 계측에서는 통계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표(Table)를 사용할 경우에는 논문에 표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으며, 중요한 경향 및 요점을 기술한다.

④ 고찰

고찰에서는 역사적, 교과서적인 내용, 연구목적과 결과에 관계없는 내용은 가능한 한 줄이고, 새롭고 중요한 관찰 소견을 강조하며, 결과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관찰된 소견의 의미 및 제한점을 기술하고, 결론 유도과정에서 필요한 다른 논문의 내용을 저자의 결과와 비교하여 기술한다.

⑤ 참고문헌

a. 참고문헌은 50개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한다. 기록된 참고문헌은 반드시 본문에 인용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은 인용된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순서를 정하여 차례로 작성한다. 영 어논문이 아닌 경우 기술된 문헌의 마지막에 소괄호를 이용하여 사용된 언어를 표기 한다.

b. 원고에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본문 중 저자명이 나올 경우 저자의 성을 영문으로 쓰고 소괄호속에 발행년도를 표시하며, 문장 중간이나 끝에 별도로 표시할 때에는 쉼표나 마침표 뒤에 어깨번호를 붙인다. 참고문헌이 두 개 이상일 때에는 소괄호속에 “ , ” 으로 구분하고 발행년도 순으로 기재한다. 저자와 발행년도가 같은 2개 이상의 논문을 인용 할 때에는 발행년도 표시뒤에 월별 발행 순으로 영문 알파벳 소문자 (a, b, c, ....) 를 첨부한다.

c. 참고문헌의 저자명은 한국인은 성과 이름, 외국인은 성과 이름, 외국인은 성 뒤에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쓴다. 정기학술지의 경우 저자명, 제목, 정기간행물명 (단행본명), 발행연도, 권, 호, 페이지 순으로 기록한다.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저서명, 판수, 출판사명, 인용부분의 시작과 끝 쪽수 그리고 발행년도의 순으로 기술한다. 학위논문은 저자명, 학위논문명, 발행기관명 그리고 발행년도 순으로 한다. 참고문헌의 저자는 모두 기재하며 저자의 성명은 성의 첫자를 대문자로 하여 모두 쓰고, 이름은 첫문자만 대문자로 연속하여 표시한다. 이름사이에는 쉼표를 쓴다. 논문제목은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학명이외에는 이탤릭체를 쓰지 않는다.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 등재 학술지의 경우 해당 약자를 사용하고, 비등재학술지는 그 학술지에서 정한 고유약자를 쓰며 없는 경우에는 학술지명 전체를 기재한다. 기술양식은 아래의 예와 같다.

d. 정기학술지 논문

Howell TH. Chemotherapeutic agents as adjuncts in the treatment of periodontal disease. Curr Opin Dent 1991;1(1):81-86 정유지, 이용무, 한수부. 비외과적 치주치료: 기계적 치주치료. 대한치주과학회지 2003;33(2):321-329

e. 단행본

Lindhe J, Lang NP, Karring T. Clinical periodontology and implant dentistry. 4th edition. Blackwell Munksgarrd. 2008. 대한치주과학교수협의회. 치주과학. 제4판. 군자

출판사. 2004.

f. 학위논문

SeoYK : Effects of ischemic preconditioning on the phosphorylation of Akt and the expression of SOD-1 in the ischemic-reperfused skeletal muscles of rats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2004.

⑥ 표 (table)

- a. 표는 영문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하며 표의 제목을 명료하게 절 혹은 구의 형태로 기술한다. 문장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한다.
- b. 분량은 4줄 이상의 자료를 포함하며 전체내용이 1쪽을 넘지 않는다.
- c.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 d. 약자를 사용할 때는 해당표의 하단에 알파벳 순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 e. 기호를 사용할 때는 \*, †, ‡, §, ..., ¶, \*\*, ††, ‡‡의 순으로 하며 이를 하단 각 주에 설명한다.
- f. 표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g. 표를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Table 1, Table 2, Table 3 이라고 기재한다.
- h. 이미 출간된 논문의 표와 동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⑦ 그림 및 사진 설명

- a. 본문에 인용된 순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붙인다.  
예) Fig. 1, Fig. 2, Fig. 3, .....
- b. 별지에 영문으로 기술하며 구나 절이 아닌 문장형태로 기술한다.
- c. 미경 사진의 경우 염색법과 배율을 기록한다.

⑧ 그림 및 사진 (Figure)

- a. 사진의 크기는 최대 175×23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 b. 동일번호에서 2개 이상의 그림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 (예: Fig. 1a, Fig. 1b)
- c. 화살표나 문자를 사진에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의 제거가 가능하도록 인화된 사진에 직접 붙인다.
- d. 그림을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Fig. 1, Fig. 2, Fig.3, ... 라고 기재한다.
- e. 칼라 사진은 저자의 요청에 의하여 칼라로 인쇄될 수 있으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⑨ 영문초록 (Abstract)

- a. 영문초록의 영문 제목은 30 단어 이내로 하고 영문 저자명은 이름과 성의 순서로 첫 자를 대문자로 쓰고 이름 사이에는 하이픈 “-” 을 사용한다. 저자가 여러명일 경우 저자명은 쉼표로 구분한다. 저자의 소속은 학과, 대학, 대학교의 순서로 기재하며 주소는 쓰지 않는다. 제목, 저자와 소속의 기재방법은 한글의 경우와 같다.
- b. 영문초록의 내용은 600 단어 이내로 작성하며 논문의 목적, 재료 및 방법, 결과와 결론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4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간결하게 작성한다. 각 문단에서는 줄을 바꾸지 말고 한 단락의 서술형으로 기술한다. 영문초록 아래쪽에는 7단어 이내의 주제어 (keyword)를 영문으로 기재하며 각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이때 주제어는 Index Medicus 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영문초록의 아래에는 교신저자 명을 소괄호속의 소속과 함께 쓰고 E-mail 주소를 쓴다.

⑩ 기타

- a.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b. 개정된 투고규정은 200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0. 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첫 장의 하단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11. 원저의 게재 및 별책 제작

원저의 저자는 원고게재에 소요되는 제작실비와 별책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 발행규정 (2010년도 발행과 관련된 모든 규정 내용 포함)

### [발행규정 중 학술지 발행일이 나와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별도 기입]

- 제3조 (발간방법) 본지는 연 12회 매월 발간 한다.

발간시기는 1월31일, 2월28(29)일, 3월31일, 4월30일, 5월31일, 6월30일, 7월31일, 8월31일, 9월30일, 10월31일, 11월30일, 12월31일에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기타 특별호 발간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발행규정 내용전문]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발간 규정

제정 2009.11. 9

제1조(목적) 본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협회”라고 칭함)의 기관지로서 회원들의 학술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렴 제공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에 치의학 정보교환을 원활히하고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지의 편집·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본지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3조(발간방법) 본지는 연 12회 매월 발간한다.

제4조(원고접수) 원고접수는 수시로 가능하며, 발간시기 40일 이전까지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하고, 본지의 학술원고 투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게재논문 종류) 본지에 게재할 논문은 치의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저, 임상 증례보고, 종설 등 회원 개인이 제출하는 기타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제6조(게재원칙) 본지는 투고논문의 학문적의의, 논리성, 창의성, 윤리성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에 통과된 논문의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게재료) 본지에 게재되는 원저의 저자는 원고게재에 소요되는 제작실비와 별책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원고 게재에 따른 제작실비 및 별책 비용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투고방법) 본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지 학술원고 투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 한 후,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한다. 원고 제출 시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원고게재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여 논문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논문 본문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논문의 접수는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접수도 허용한다.

제9조(심사방법) 본지에 접수된 논문은 심사규정에 의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10조(저작권 이양) 저작권과 관련해 논문의 내용, 도표 및 그림에 관한 모든 출판 소유권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가진다. 모든 저자는 이에 대한 동의서(대한치과의사협회지 원고게재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원고의 저작권이 협회로 이양될 때 저자가 논문의 게재를 승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연구윤리 관련 규정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및 연구윤리) 본 규정은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협회지의 논문 투고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협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윤리 준수) 본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 1) 게재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인체 실험의 윤리성을 검토하는 기관 또는 지역 “임상시험윤리위원회”와 헬싱키 선언의 윤리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연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사육과 사용에 관련된 기관 또는 국가연구위원회의 법률을 지켜야 하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한다.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서면동의서 및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연구대상자의 얼굴 사진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눈을 가리며 방사선 촬영 사진 등에서 연구대상자의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눈을 가릴 수 없는 경우는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 게재할 수 있다.
- 4)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와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자료의 부적절한 중복 사용 등이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5) 투고 및 게재 논문은 원저에 한하며,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지에 투고할 수 없다. 또한 본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3조(연구윤리 위반) 본지 제2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한다.

1. 위반사항을 공문으로 경고 조치
2. 투고원고를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
3. 연구윤리위반자에 대하여는 본지에 2년간 논문투고 금지

제4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기타 규정

“해당 없음”

- ※ 규정(전문)을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사항이 없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없음”이라고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기관의 특성상 상기 규정 명칭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각 규정에 부합되는 기관 자체의 규정, 규칙 등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